

산림청 공고 제2015-20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장수오미자’의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 공고결정을 하고 그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2. 15.

산림청장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

1.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주요내용

가.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 장수군산림조합(대표 김종식)
- 주소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준비길 9
- 전화번호 : 063-351-5030

나.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 품목 : 오미자
- 등록명칭
 - 한글명 : 장수오미자
 - 영문명 : Jangsu Omija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전라북도 장수군 일원

라.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붙임 1]과 같다.

마. 신청인의 자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자체 품질기준은 [붙임 2]와 같다.
- 품질관리계획서는 [붙임 3]과 같다.

2.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의 열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열람장소

-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oa.go.kr>) 또는 사유림경영소 득과(담당 심양수 사무관 ☎ 042-481-4206)

* 산림청 소재지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1동 산림청)

다. 열람내용 : ‘장수오미자’의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

3.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나. 접수기관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 득과(담당 심양수 사무관)

다. 제출서류 :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참고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

1. 오미자의 특성

가. 오미자의 형태적 특성

오미자는 낙엽활엽 덩굴성 식물로 줄기가 길고 가지를 많이 친다. 뿌리는 주근이 없고 20-30cm의 잔뿌리가 다수 발생하여 수염뿌리 형태를 이룬다. 꽃은 전년도에 성장한 줄기의 엽맥에서 2-4개가 착생한다.

나. 오미자 생육특성

오미자의 뿌리는 천근성이므로 지하수위가 낮고 배수가 잘되는 중산간 한냉 지대에서 잘 자란다. 토양공극이 많은 양토나 사양토로서 통기성과 보습력이 양호하며 부식함량이 많은 곳이 적지이다. 토양 산도는 pH 6.5 정도이다.

오미자는 양지식물이며 특히 화아분화기에 햇볕이 잘 들어야 꽃눈형성이 잘 되고 암꽃의 비율이 많아진다. 혹서기의 고온을 막기 위해 과원의 방향은 서북향이나 북향이 좋다.

오미자는 내한성이 강하고 고온에 약하므로 여름철 고온을 피할 수 있는 중부 이북의 중산 고랭지가 재배적지이며, 우리나라 주 재배지역은 전북 장수, 무주, 진안, 강원도 인제 등지이다.

다. 자생지 환경

오미자의 자생지 표고는 해발 500-700m의 준 고랭지 산록 북쪽방향의 계곡이나 구릉 등의 습도가 높으며, 토층은 잔자갈의 위층에 마사토와 부엽토가 쌓여 배수가 용이한 지반이 형성된 지역이다.

2. 품질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장수오미자의 재배지는 장수군내 자생지의 권역 내에 분포하고 있어 지형적

특성, 토양적 특성 및 기후적 특성이 자생지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장수오미자는 재배환경이 자생지와 같은 최적 환경이므로 재배기술의 투여가 적어 친환경 청정 오미자로 인정받고 있다.

가. 지형적 특성

장수군 오미자 재배지의 표고는 해발 400에서 500m사이가 42%로 제일 많고, 500에서 600m사이가 19%, 300에서 400m사이가 18%로 분포하고 있으며, 600m 이상이 17%를 차지하고 있다.

장수군 내 오미자 자생지의 표고가 해발 500에서 700m사이로 조사되었는데, 인데, 재배지의 표고가 300-600m로 조사되어 장수군의 오미자는 자생지의 분포 지역내의 환경에서 재배하여 생산된다. 300m에서 500m까지의 재배지역도 밭으로 개간하기 전에는 산지로 오미자가 분포하는 자생지였다.

나. 토양적 특성

오미자 재배지의 토성은 계북면의 사양토를 제외한 대부분이 양질사토로 되어 있다. 양질사토는 모래함량이 70-85%로 미사질 양토보다는 모래함량이 20-35% 그리고 미사질식양토보다는 모래함량이 50-65%정도 많다.

오미자는 천근성으로 지하수위가 낮고 배수가 잘되는 지대에서 잘 자랄 수 있고 토양공극이 많은 양토나 사양토로서 통기성과 보습력이 양호 하며 부식함량이 많은 토양이 곳이 적지인데, 장수군의 오미자 재배지의 토양 특성은 자생지의 특성과 크게 차이가 없이 물 빠짐이 양호한 양질사토로 되어 있다.

오미자 재배지의 토양 pH는 4.55-6.78의 범위로 평균 5.53을 나타내고 있고, 유기물함량은 1.05-5.42의 범위로 평균 3.79%를 나타내고 있다. 총질소 함량은 817-1,060mg/kg의 범위로 평균 958mg/kg이고, 암모니아태질소는 26.5-63.1의 범위에서 평균 44.4mg/kg 그리고 질산태질소의 함량은 16.3-41.1mg/kg의 범위로 평균 28.0mg/kg를 나타내고 있다.

장수군은 오미자의 자생지역이나 재배지역 모두 토양의 중금속 오염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장수오미자의 안전성이 높은 우수품질을 자랑하고 있다.

다. 기후적 특성

장수군은 대륙성 기후지역으로 고산지대의 지형적 영향을 받는 한랭한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1990년에서 2006년까지의 17년간 분석한 기상자료에서 월평균 기온이 $-4.9-25.6^{\circ}\text{C}$ 의 분포로 연평균 기온은 10.5°C 로 나타났고, 월평균최고기온은 $0.8-31.4^{\circ}\text{C}$ 의 분포로 연평균 최고기온이 16.9°C 로, 월평균최저기온은 $-11.4-21^{\circ}\text{C}$ 의 분포로 연평균 최저기온은 4.9°C 를 나타내어 우리나라 연평균기온, 연평균최고기온, 연평균최저기온보다 낮게 나타났다. 연평균 기온은 거창과 문경보다 장수가 낮았다.

장수군의 월강수량은 $0.5\text{mm}-789.5\text{mm}$ 의 분포로 나타났고, 연강수량은 $742.3-2,207.4\text{mm}$ 의 분포로 나타나 17년 연평균 강수량은 $1,493.4\text{mm}$ 로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보다 높게 나타났고 거창과 문경보다 많았다.

습도는 연평균 $54.9-88.4\%$ 의 분포로 17년 평균은 74.6% 로 나타나 우리나라 평균습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고, 풍속은 $0.8-2.6\text{m/s}$ 의 분포로 평균 1.7m/s 를 나타내어 우리나라 평균풍속 2.1m/s 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월일조시간은 $33.7-264.9$ 시간의 분포로 월평균일조시간은 177.4 시간이며, 연일조시간 분포는 $1,852-2,502$ 시간으로 연평균 일조시간 $2,138$ 시간으로 우리나라 연평균 일조시간보다 짧은 편이다.

오미자는 내한성이 강하고 고온에 약하므로 여름철 고온을 피할 수 있는 중부이북의 중산 고랭지가 재배적지로 추천하는데, 장수오미자는 자생지인 천혜의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오미자로 인지도가 높다.

라. 인적특성

(농가 재배기술의 상황) 장수오미자 재배농민들은 1974년부터 장수군 관내에서 자생하고 있는 오미자를 채집하여 재배를 시도하면서 재배기술을 스스로 연구 발전시켰다. 마을단위 농민들이 서로 힘을 합치면서 덩굴성 오미자의 특성에 따라 자생지의 환경과 비슷하게 재배방법을 개발하여 울타리식과 덕식의 재배모형을 도입하여 오미자 재배에 성공하였다.

이후 농촌진흥청 호남시험장에서는 오미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진안숙근약초시험장에서는 오미자 재배 및 품종연구를 시작하였다.

(체계적 과학적인 오미자 재배 기술개발) 장수오미자 재배농가의 노력으로

정부 연구기관(농촌진흥청과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및 대학에서 오미자 재배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 오미자 품종 “청순”이 개발되었고, 하우스아치형 재배모형은 장수농업기술원에서 처음으로 장수지역에 보급하였다.

2004년에는 농촌진흥청에서 대학교수들을 주축으로 산학연협력단을 결성하여 현장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하였는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상작목은 오미자, 대상지역은 장수군이 선정되어(단장 전북대학교 이강수 교수) 10년 동안 활동하였다.

장수군에서는 2008년에 장수오미자클러스터사업단을 구성하여 3년동안 농림수산식품부의 향토사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전북대학교에서는 2010년에 장수레드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식경제부의 지역연고사업으로 장수군 오미자를 포함하는 가공산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수행하였고, 2011년에는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특화작목클러스터 사업에 장수군 오미자가 선정되어 사단법인 장수농식품선도사업단이 탄생하게 되었다.

장수군과 장수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장수오미자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지원 사업단을 구성하였다. 오미자 재배기술 및 가공 산업화 기술개발에 집중한 결과 장수오미자 재배기술이 전국으로 확산하여 우리나라 오미자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오미자 관련사업 인프라 구축) 지역의 농식품 산업은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 생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관련된 1차 산업, 가공과 관련된 2차 산업, 유통판매와 문화 및 축제 등과 관련된 3차 산업이 서로 융복합적으로 생태계가 조성되어 6차 산업화가 형성되어야만 체계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장수지역에는 장수오미자클러스터사업단, 장수농식품선도사업단, 장수산림조합,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 장수군농업기술센터, 거점산지유통센터 등의 오미자 관련 기관들이 하나의 Cluster를 형성하여 품종개발, 재배기술발전, 가공산업육성 등 오미자 산업 발전에 필요한 총체적 인프라를 이미 구축하고 있다.

3. 인용문헌(년도, 저자, 제목, 발행기관)

1979_원종철_오미자 재배기술(전국농업기술자협회)

2004_이강수_전북 약초특화사업단 2004사업실적보고서(전북약초특화사업단)

- 2005_이강수_청정장수 오미자 신혁신전략사업(전라북도약초특화사업단)
- 2006_이강수_장수오미자 가공 및 상품화 전략연구(장수군)
- 2006_김종엽_오미자재배 및 관리기술(전북오미자특화사업단)
- 2009_정남진-장수오미자 생산기반데이터베이스 구축(장수오미자클러스터사업단)
- 2009_이강수_오미자재배지역별 식품학적 특성과 유효성분 비교(장수오미자 클러스터사업단)
- 2009_조재영_고품질 안전 오미자 가공상품 개발을 위한 환경위해물질 잔류 실태조사 및 품질기준 설정(장수오미자클러스터사업단)
- 2009_김명곤_친환경 고품질 청정오미자 생산기술 및 상품화 기술개발(농촌진흥청)
- 2009_조재영_장수오미자 자생지 환경생태학적 분석과 지속적인 보전방법 수립 (장수오미자클러스터사업단)
- 2012_나혜진-장수오미자 선도클러스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장수식품선도사업단)

자체 품질기준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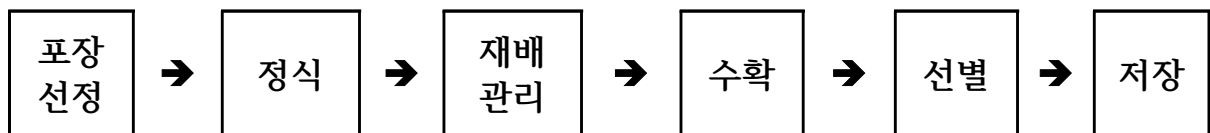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 장수오미자의 재배에서 판매에 이르기 까지 전 과정에 걸쳐 생산자가 준수해야 할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역사적인 명성·품질 및 기타 특성을 유지·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자체품질기준의 설정범위는 농촌진흥청 고시 농산물우수관리기준과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였다.

지리적특산물 장수오미자는 자체품질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일반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우수한약재생산관리지침에 따라 재배하도록 하였다.

2. 장수오미자 재배 및 선별기준

가. 재배과정



나. 재배포장 환경기준

- 신규재배포장은 해발 300m에서 600m사이에서 조성한다.
-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에 관련된 토양오염우려기준 I 지역 [별첨 1]을 충족해야 한다.
- 토양 중금속분석은 4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 정식기준

- 재배 묘종은 조합장과 협의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 비료 시비량은 군농업기술센터 및 농업전문기관 등의 시비 처방서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정식 전 지주를 설치해야 하며, 유형은 지형에 따라 하우스(아치형)식, 울타리식, 덕식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라. 재배관리기준

1) 물 관리

- 농업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농업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용수[별첨 2]를 사용하여야 한다.
- 농업용수 수질분석은 4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시비 관리

- 비료는 비료관리법의 공정규격에 적합한 비료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내역을 기록·관리(별지서식 1호)하여야 한다.
- 퇴비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규제기준 이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3) 병충해 관리

- 병충해방제는 농촌진흥청 고시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별첨 3)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내역을 기록하여 (별지서식 2호) 수확 후 2년 이상 관리하여야 한다.

마. 수확기준

- 수확은 해발 300m에서 600m사이의 포장에서 정식한 후 3년째부터 실시하며, 생산량 등(별지서식 3호)을 기록해야 한다.
- 잔류농약수준은 식약청이 고시한 농약잔류허용기준(별첨 4)에 적합해야 한다.
- 농약잔류검사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출하일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바. 선별기준

- 수확된 생오미자는 지리적특산물 등급기준에 적합하도록 선별한 후 포장 단위에 따라 P.E와 P.P비닐로 포장해야 한다.
- 선별, 포장 등의 작업장 주변은 상품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없도록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건오미자는 45℃이하의 온도로 수분함량이 25%이내가 되도록 열풍 건조하여 품질변화를 막을 수 있도록 P.E와 P.P비닐 등으로 포장해야 한다.

사. 저장기준

- P.E와 P.P비닐 등으로 포장된 오미자는 저온저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3. 장수오미자 품질기준

항목/등급	특	상	보통
고르기	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5%이하인 것	무게 구분표상 무게가 다른 것의 혼입이 10%이하인 것	“특, 상”에 미달하는 것
색택	고유의 색택으로 착색 정도가 뛰어난 것	고유의 색택으로 착색이 양호한 것	
신선도	고유의 맛과 향이 뛰어난 것	고유의 맛과 향이 양호한 것	
무게	무게 구분표상 M 이상인 것	적용하지 않음	
가벼운결점	없는 것	3%이하인 것	5%이하인 것

(1)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 비율을 말한다.

(2) 가벼운 결점

- ① 고유의 모양인 아닌 것
- ② 병충해 피해가 경미한 것
- ③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가. (생오미자) 무게 구분

구분/호칭	L (대)	M (중)	S (소)
100립의 무게(g)	22 이상	18 이상 - 22 미만	18 미만

다. 포장 기준


- 1) 유통과정에서 오미자가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 작업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포장재는 양면 골판지를 사용한다.
- 2) 포장단위는 다음을 기준으로 하며, 거래당사자 또는 시장유통 당사자 여건에 따라 포장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 3) 포장제의 규격은 임산물 표준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오미자의 포장단위>

구분	생오미자
단위	1kg, 3kg, 5kg, 10kg, 20kg

라. 표시 기준

1) 지리적표시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와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고 고시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을 따른다.

 <p>지리적표시 (PGI) 농림축산식품부</p>	<p>등록명칭 : 장수오미자[Jangsu Omija] (Schizandra) 산림청 지리적표시등록 제00호 생산자 : 장수산림조합 주소(전화)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준비길 9 (063-351-5030)</p>
<p>이 상품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가 보호되는 제품입니다.</p>	

2). 표시방법

- (1) 크기 :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시의 크기를 가감할 수 있다.
- (2) 위치 : 포장재 측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3) 표시내용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 (4) 포장하지 아니하고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 등으로 지리적표시 등록품의 표시를 인쇄 또는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심벌로고와 등록명칭만 표시할 수 있다.
- (5) 글자의 크기는 활자의 기준 수치에 (KSA)규정하는 크기 5 point 이상의 문자를 용도에 따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라. 일괄표시 기준

- 1).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2). 표시사항 : 다음 사항을 아래 양식에 따라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일괄 표시하여야 한다.

① 품목명	② 원산지	③ 품종	④ 등급	⑤ 중량
⑥ 생산자	⑦ 반품안내	⑧ 전화번호	⑨ 보관방법	

3) 표시방법 : 일괄표시사항의 기재는 다음에 정한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품 목 명 : ‘장수오미자’(Jangsu Omija)라고 표시

(2) 원 산 지 : ‘전라북도 장수군’으로 표시

(3) 품 종 : 품종명 표기

(4) 등 급 : ‘특품’·‘상품’으로 표기

(5) 중 량 : 5kg, 10kg 등으로 표시

(6) 생 산 자 : 법인명 또는 회원명 기재

(7) 반품안내 : ‘내용물이 표시내용과 다른 경우 교환하여 드립니다.’라고 기재

(8) 전화번호 : 조합 또는 회원의 전화번호를 기재

(9) 보관방법 : 보관방법 기재

마. 허위표시 등의 금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명시된 ‘허위표시 등의 금지사항’과 식품위생법, 정관 등에 제시된 표시금지사항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4. 장수오미자 출하 전·후 관리

가. 출하방법

- 1) 장수군산림조합이 직접 구매·공판을 하여 출하하는 경우는 선별 및 포장 기준 등을 자체적으로 준수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2) 조합이 농협 등 현지 생산자조직이나 유통업자에게 구매·공판을 위탁할 경우 선별 및 포장기준 등에 대한 준수여부를 조합 품질조사원이 직접 검수한 후 출하한다.
- 3) 조합에 구매나 공판을 의뢰하지 않고 생산자가 직접 출하하는 경우 선별 및 포장기준 등에 대한 준수여부를 조합 품질관리조사원이 직접 검수한 후 출하한다.

나. 생산이력관리

- 1) 조합원은 비료 사용일지[별지서식 제1호]와 농약 사용일지[별지서식 제2호]를 작성보관하고, 생산물관리대장[별지서식 제3호]과 지리적특산품 생산량 기록대장[별지서식 제 4호], 그리고 지리적표시품 출하량 기록대장[별지서식 제5호]을 작성한다.

- 2) 조합장은 토양중금속분석과 수질분석을 4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지리적 특산품의 생산유통 등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장수오미자 지리적표시품 구매기록대장’[별지서식 제6호], ‘장수오미자 지리적표시품 출하량 기록대장’[별지서식 제7호], ‘장수오미자 지리적표시품 등록 표지 불출량 기록대장’[별지서식 제8호]을 작성·비치하며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 3) 조합은 품질조사원을 통하여 회원들의 지리적표시품 생산이력관리 준수여부를 관리해야 하고, 회원들이 생산한 지리적특산품의 판매내역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 지리적특산품 구분 관리 기준

농산물표준규격 품질기준의 특·상품에 부합하는 오미자만을 지리적표시품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다른 지역의 오미자를 장수오미자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라. 포장재 및 등록표지 관리

- 1) 지리적표시 포장재 및 등록표지는 법인에서 일괄 제작 및 관리한다.
- 2) 개인회원과 단체회원 구성원의 개별적인 포장재 사용을 금한다.
- 3) 조합원의 지리적특산품 생산규모를 조사하여 지리적표시 포장재 및 등록표지를 관리한다.

5. 자체품질기준의 개정 및 보완

지리적표시 제도나 해당 행정기관의 정책 및 기준 등이 변경될 때에는 품질 관리 기준을 개정 보완하여야 하고, 개정 보완된 자체품질관리기준은 지리적표시등록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별첨 1]



토양오염우려기준

(단위: mg/kg)

물질	1지역
카드뮴	4
구리	150
비소	25
수은	4
납	200
6가크롬	5
아연	300
니켈	100
불소	400
유기인화합물	1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
시안	2
페놀	4
벤젠	1
톨루엔	20
에틸벤젠	50
크실렌	15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8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4
벤조(a)피렌	0.7

1. 지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학교용지·구거(溝渠)·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농업용수 수질환경기준

구분 등급		상태 (캐릭터)	기 준						
			수소 이온 농도 (pH)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mg/L)	화학적산 소 요구량 (COD) (mg/L)	총유기탄 소량 (TOC) (mg/L)	부유 물질량 (SS) (mg/L)	용존 산소량 (DO) (mg/L)	총인 (T-P) (mg/L)
하천	IV		6.5~8.5	8 이하	9 이하	6 이하	100 이하	2.0 이상	0.3 이하
호수	IV		6.0~8.5	-	8 이하	6 이하	15 이하	2.0 이상	0.1 이하

오미자 재배 농약안전사용기준

적용병해	품목명 (상표명)	사용적기 (발병초기 부터 간격일)	물 20L당 사용약량	안전사용기준	
				수확 전 일수	사용가능 횟수
점무늬병	펜뷰코나졸화제 (바톤)	10	20ml	30	3
	플루퀸코나졸· 피리메타닐액상수화제 (금모리)	10	20ml	21	3
	헥사코나졸수화제 (푸지매)	10	8g	14	3
	피라클로트트로빈 유제 (카브리오)	10	5ml	21	4
흰가루병	트리포린유제 (경농사프롤, 뉴프롤)	10	20ml	14	3
	페나리몰유제 (동부훼나리)	7	6.7ml	7	3
	바실루스서브틸리스와이1336수화제 [상표명: 바이봉, 미생물농약]	7	25g	7	제한없음
탄저병	아족시스트로빈 액상수화제 (오티바)	7	10ml	14	4
	이미녹타딘트리스 알베실레이트.티람 수화제 (참조네)	7	20g	14	3
	피라클로스트로빈 입상수화제 (카브리오에이)	7	6.7g	7	3
식나무 깍지벌레	뷰프로페진.메톡시페노자이드 수화제 (선호탄)	10	20g	14	3
	아미트라즈.뷰프로페진유제 (히어로)	10	20ml	21	3
	아세타미프리트 수화제 (모스피란,어택트)	10	10g	14	3
	클로티아니딘 입상수화제 (뚝소리)	10	10g	21	3

※ 안전사용기준 개정시 신규 기준을 적용한다.

오미자 농약잔류허용기준

(단위: mg/kg)

농약성분	생오미자	건오미자	오미자가공식품
크로치아니딘	3.0	-	-
헥사코나졸	1.0	-	-
아미트라즈	-	2.0	-
아세타미프리드	-	2.0	-
아족시스트로빈	-	2.0	-
부프로페진	-	3.0	-
디메칠디치오카바메이트	-	10.0	-
페나리몰	-	2.0	-
이민옥타딘	-	1.0	-
메톡시페노자이드	-	1.0	-
피라크로스트로빈	-	5.0	-
트리포린	-	1.0	-
웬부코나졸	3.0	3.0	3.0
플루퀸코나졸	3.0	3.0	3.0
피리메타닐	3.0	3.0	3.0

※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시 신규 기준을 적용 한다

장수오미자 지리적표시품 수매량 기록대장

(장수군산림조합 법인용)

(단위 : kg)

· 지리적특산품 구분: ()품(특과 상으로 구분표기)					
수매 연월일	수매량	생산자	전화번호	확인	누계
계					

[별지서식 제8호]

장수오미자 지리적표시품 포장재 불출량 기록대장

(장수군산림조합 법인용)

(단위 : 개)

포장재 구분: 등록표지					
불출 연월일	불출량	인증지 일련번호	조합원명	전화번호	확인
		~			
		~			
		~			
		~			
		~			
		~			
		~			
		~			
		~			
		~			
		~			
		~			
		~			
		~			
계					

품질관리계획서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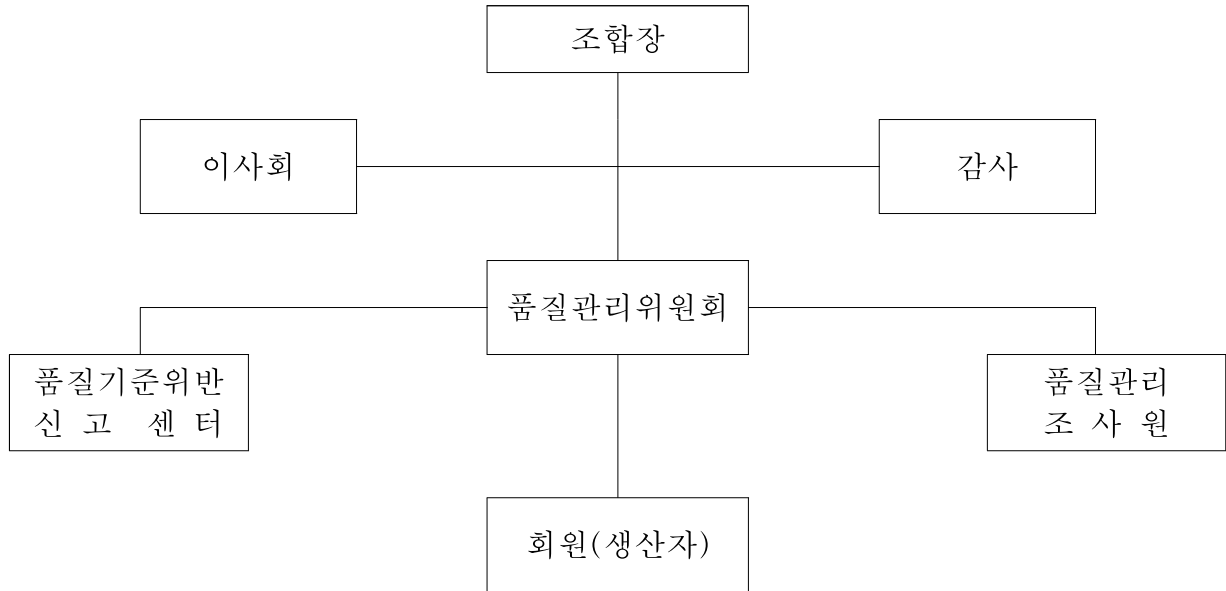
- 지리적표시 장수오미자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자체품질기준의 준수여부 조사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 구성원은 지리적표시품 “장수오미자”의 품질관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2. 당해년도 품질조사계획의 수립

- 장수군산림조합 조합장은 매년 2월말 이전에 장수오미자에 대한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장수군산림조합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3월말 이전에 확정하여 동년 4월말까지 산림청에 보고한다.
- 품질관리계획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품질관리를 위한 이사회, 감사 및 품질관리위원회 현황
 - 품질관리조사원 현황
 - 장수오미자 생산 조합원의 구성현황
 - 장수오미자 생산 및 유통계획
 - 품질조사 세부계획(조사구분 및 방법 등)
 - 장수오미자 생산자 및 품질관리인 교육 계획
 - 품질관리 및 유통시설 확충계획
 - 사업예산 확보계획

3. 조직 및 인력현황

1) 장수군산림조합 조직도



2) 인 력

구 분	조합장	이 사	품질관리 위원회	감 사	품질관리 조사원
인 원	1	8	5	2	10

3) 임 무

○ 조합장

- 지리적특산품의 품질관리위원회를 대표함
- 지리적특산품에 대한 품질조사계획과 사업예산계획을 수립함
- 품질관리위원회 위원과 품질관리조사원을 임명함
- 지리적특산품의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함

○ 이사회

-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 규정을 심의·의결함

- 품질관리계획과 사업예산을 심의·의결함
- 지리적특산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을 추천함
- 감 사
 - 회계연도마다 지리적특산품관련 업무집행 상황을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 및 조합장에게 보고함
- 품질관리위원회
 - 지리적표시제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심의·의결함
 - 품질조사결과 및 조치방법을 심의·의결함
 - 품질관리교육계획의 수립함
 - 품질조사원 추천함
- 품질관리조사원
 - 자체품질기준의 이행여부를 조사함
 - 생산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 조사시료의 수거 및 분석기관에 분석 의뢰함
 - 자체품질기준 위반자에 대한 처분 이행여부를 확인함
- 조합원
 - 지리적특산품의 유해 물질기준, 등급기준, 표시사항 준수 확인
 - 지리적특산품의 명성 가치와 명예의 유지·향상
 - 일자별 비료, 농약 사용 재배일지, 생산량 및 등록품 판매량 기록
 - 시료수거·관련 장부의 열람 협조
 - 부정 등록품의 감시 및 신고

4.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임명

1) 자격

- 생산자 대표, 관계 기관 담당자, 지역 전문가로 이사회에 추천을 받은 자

2. 임명

- 품질관리조사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조합장이 임명함

5. 품질관리조사원의 자격 및 임명

1) 자격

- 장수오미자 생산에 3년 이상 계속해서 종사한 자
- 임산물 품질관리업무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종사한 자
- 농학사 및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자
-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2)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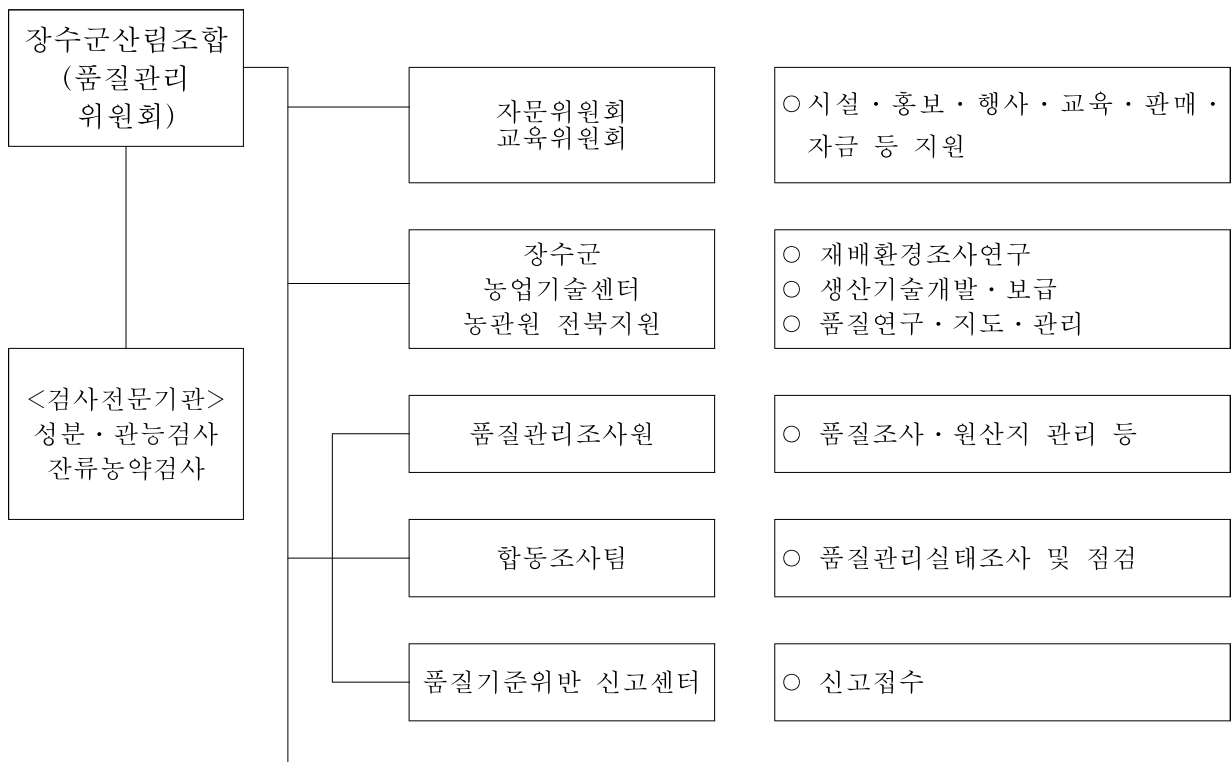
- 품질관리조사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품질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조합장이 임명
- 품질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소속, 성명, 주민등록번호, 조사기간 등이 기재된 대표이사 명의의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함
- 품질관리조사원은 장수군내 읍·면별로 1명 이상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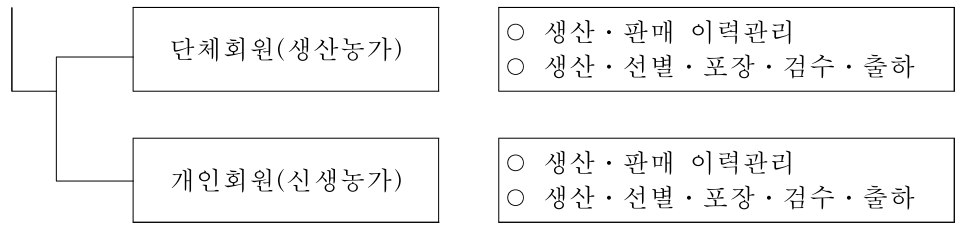
6. 유관기관 협력체계

- 관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조합장은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관내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
- 자문 및 교육위원회 운영

- 시설 · 홍보 · 행사 · 교육 · 판매 · 자금 · 재배 · 가공기술 개발 및 보급 등 다각적인 지원협조체제의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자문 및 교육위원회를 설치 · 운영
- 자문 및 교육위원회는 년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따른 농가교육을 년 2회 이상 실시
- 구성 및 역할
 - 장수군 : 장수오미자 지리적특산품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축제 · 홍보 · 판매 · 자금 등에 다각적인 지도와 지원
 - 장수군농업기술센터 : 품질이 우수한 장수오미자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친환경발제 및 고품질 밤 재배 기술 교육 · 보급 · 지원
 - 농관원 전북지원 : 지리적특산품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유통단계 조사에 있어 기술지원을 하고 잔류농약 검사 등 품질검사에 협조.

<유관기관 협력체계>





○ 합동조사팀 운영

- 합동조사팀은 유통단계에서의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품질조사·잔류농약검사를 의뢰 및 지리적표시의 부정사용 여부 등을 조사
- 구성 : 자문위원 소속기관을 주축으로 하여 구성

7.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

가. 품질조사

1) 품질조사 주체

- 지리적특산품의 품질조사는 장수군산림조합이 실시

2) 성분 및 잔류유해물질 등의 분석

- 지리적특산품의 성분 및 잔류농약 등의 분석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농산물검사·검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방법」의 감정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분석을 의뢰

3) 조사기준

- 품질 및 등급기준은 ‘장수오미자 자체품질기준’에 의해 적용
- 잔류농약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잔류농약기준에 의거
- 토양은 토양오염물질이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중 농경지기준에 적용
- 재배용수는 환경정책기본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기준의 농업용수에 의해 적용

4) 조사대상

- 장수군산림조합의 조합원이 생산하는 장수오미자를 대상품목으로 하며, 특산품이 아닌 허위표시제품 또는 유사표시제품 등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여 관련법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함

나. 조사의 종류

- 지리적특산품의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체품질관리기준에 따라 품질관리조사원이 직접 조사를 시행하고,
-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상품목의 특성에 따라 재배단계검사, 출하단계 검사, 유통단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

1) 재배단계 검사

- 재배과정에서 생산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체품질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함
- 토양관리 검사와 수질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공공시험연구기관에 의뢰

2) 출하단계 검사

- 지리적특산품으로 출하하기 위하여 포장을 완료한 오미자를 대상으로 시료를 수거하여 일괄 표시사항 및 포장실태, 품질 (품위 및 상태), 잔류농약 등의 유해물질, 원산지 등을 조사

3) 유통단계 검사

- 유통단계 검사는 지리적표시품의 등록기준 준수여부, 포장재의 진위여부, 의무표시사항 및 표시금지사항의 표시 등 표시의 적정성 여부 조사
- 유통 중에 있는 지리적표시품을 대상으로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대형유통센터 등에서 시료를 수거하여 중량, 표시사항 및 포장실태, 품질(품위 및 상태), 잔류농약 등의 유해물질, 원산지 등을 조사

다. 조사의 방법 및 절차

1) 재배과정조사

- 조사사항 : 재배포장 선택 및 토양관리, 시비, 제초, 병충해방제 등
- 오미자 재배과정조사 검사는 읍·면별로 년 1회 실시하며, 재배농가에 현지출장 하여 [별지서식 9호]에 의거 자체품질관리기준에 적합여부를 재배 기록을 확인하거나 청취조사 실시

2) 포장 전 원료조사

- 조사시기 : 수확 후 포장 또는 가공 전 1회 이상 조사
- 조사사항 : 수확, 건조 및 품질(품위 및 상태),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원산지 등
- 조사방법 : 수확, 건조 및 원산지등을 확인하고, 시료를 수거하여 성분 및 잔류농약분석 실시

3) 출하단계조사

- 조사시기 : 오미자 포장 후 출하 전
- 조사사항 : 농가(또는 가공공장) 또는 저장창고에서 시료를 수거하여 중량, 표시사항 및 포장실태, 품질(성분 및 품위) 등
- 조사방법 : 농가 또는 저장창고에 출장하여 [별지서식 10호]에 의거 중량, 표시사항 및 포장실태 등을 확인하고, 시료를 수거하여 성분 및 잔류농약분석 실시

4) 유통단계조사

- 조사시기 : 오미자 출하 후.
- 조사사항 : 유통 중에 있는 지리적표시품을 대상으로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대형유통센터 등에서 시료를 수거하여 중량, 표시 사항 및 포장실태, 품질(품위 및 상태), 잔류농약 등의 유해물질, 원산지 등을 조사

- 조사방법 : 도매시장 및 소매 시장, 대형유통센터 등을 출장하여 [별지서식 10호]에 의거 중량, 표시사항 및 포장실태 등을 확인

라. 성분분석 및 잔류농약분석을 위한 시료수거 및 분석의뢰

1) 시료수거

- 잔류농약검사 및 이의신청조사를 위한 시료 수거에는 조합원, 품질관리조사원 등 이해관계자를 입회토록 함
- 품질관리조사원은 지리적특산품의 성분함량 및 유해물질 분석을 위하여 지리적표시품 또는 원료농산물을 수거하고자 할 때에는 소유자에게 시료수거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후 다음 요령에 의하여 시료를 수거하여야 함
- 품질관리조사원은 입회자 앞에서 포장을 손상하지 않은 상태로 수거한 시료에 일시, 장소, 수거자(품질관리조사원) 및 입회자가 성명을 기재
- 수거한 시료는 형상 등의 변화가 적고 2차오염이나 파손, 변질 등에 유의하여 수거 시점부터 3일 이내에 분석기관에 송부
- 시료수거량

구 분	토양검사	잔류농약검사
분석의뢰용	1kg 이상	1kg 이상
조합보관용	1kg 이상	1kg 이상

2) 시료수거 방법

- 시료를 수거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대상 모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재상태, 보관상태 등을 고려하여 시료수거 대상부위를 선정한 다음 무작위로 채취
- 토양검사 시료채취요령(농촌진흥청)에 의거 채취지점(동일 필지 내)내에서 20~30개소에서 표면의 흙을 긁어내어 이물을 제거한 후 시료채취도구(오거, 삽)로 15cm깊이까지의 흙을 각각 채취, 채취한 시료를 균일하게 혼합하여 2등분하여 봉인한 후, 1점은 전문시험연구 기관에 송부하고 나머지

는 조합에 보관

- 잔류농약검사 시료의 수거는 동별로 2점씩 채취하여 1점은 전문시험연구기관에 송부하고 나머지는 조합에 보관

3) 시료 보관

- 조합장은 시료를 보관할 때에는 분석의뢰서 사본을 보관용 시료에 첨부한 후 내용물이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조합원 및 유통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15일간 보관하며, 다만 분석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시에는 그 보관기간을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

4) 시료 분석의뢰

- 품질관리조사원은 수거한 시료를 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서식 11호]에 의거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분석기관에 의뢰

마. 조사결과 조치

- 개별기준

처분대상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장수군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오미자를 장수 오미자로 출하 2. 농약잔류허용기준 위반	출하정지 1년	출하정지 3년	제명
3. 장수오미자 지리적특산품 자체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4. 품질관리조사원의 조사에 불응한 자	시정명령	표시정지 1월	표시정지 2년
5. 전업·폐업 등의 사유로 지리적표시품의 생산이 곤란한 자	제명		

바. 조사결과 의 통보 및 이의 제기

- 조사내용이나 표시정지 및 금지 사항 등은 즉시 해당 제품의 생산자에게 통보
- 해당 지리적표시품의 생산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조합장은 이의신청을 제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나 심의 통보를 완료

사. 위반자에 대한 교육

- 품질조사 결과 표시정지 및 표시금지에 해당하는 위반자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해 품질 및 등급기준 준수에 대한 교육과 각서를 징구
- 위반의 사유가 자체품질기준이나 기타 기준 등에 미숙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위반사항 및 전체 관리기준에 대한 구체적 지적 및 교육을 법인이 자체적으로 실시
- 위반의 사유가 고의적인 경우에는 위반일시·내용 및 과정·재발방지·처벌수용 등에 대한 [별지서식 12호]에 따라 자필각서를 징구하고 지리적표시제의 의의 및 내용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아. 기타사항

- 품질관리계획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의 관련규정을 따름
- 조사계획의 수립, 품질관리조사원 결정, 시료수거, 분석의뢰, 이사회심의, 이의신청 심사 등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지리적표시품과 관련한 제반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불이익을 가해서는 아니 됨.